기후변화법제 자료 14-19-(1)

## 제 1 차 기후변화법제포럼

2014.4. 4.


# 제 1 차 기후변화법제포렴 

2014. 4. 4. 



| 시 간 | 구 분 | 내 용 |
| :---: | :---: | :---: |
| 17:00~17:30 | 제 2 세션 | - 녹색기후기금의 특성과 향후 정책방안 <br> -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17:40~18:20 |  | - 종합 토론 |
| 18:30~ | 만 찬 |  |

## 목 차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개관 ..... 9
【제 1 세션】（O）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발표자：이상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21
【제 2 세션】
（）녹색기후기금의 특성과 향후 정책방안
발표자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1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개관










제 1 차 기후변화법제포럼


## 제 1 세션

$$
\begin{gathered}
\text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 \\
\text { 위한 국가할당방안 }
\end{gathered}
$$

발 표 자: 이 상 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 할당방안을 중심으로


## 발표내용

1.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경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 할당개요
3. 국내 배출권거래제 특징
4. 거시할당
5. 미시할당
[^0]
## 2 할당개요

할당 (Burden Sharing, Allowance Allocation)



```
- 오ᄂ시ᄅ가스.에너지 모ᄀ표과ᄂ리제와의 여ᄂ계
- 차ᄆ여자, 모ᄀ표서ᄅ저ᄋ바ᄋ시ᄀ, 조기해ᄋ도ᄋ, MRV 드ᄋ
- 저ᄋ채ᄀ여ᄂ계 바ᄂ여ᄋ 무ᄂ제
```

에너지 가격체계 고려

- 시장메커니즘 미반영 현 가격체계
- ETS하의 간접배출 접근 문제 발생


## 4.거시할당

## 국가간 할당: 기후변화협약

"The Parties should protect the climate system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humankind,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ccordingl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take the lead in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the adverse effects thereof."

- 기후변화협약 제 3 조 1 항 -

```
 오ᄂ시ᄅ가스 가ᄆ추ᄀ노려ᄀ에 대하ᄂ 저ᄂ 세계 모드ᄂ 구ᄀ가의 고ᄋ도ᄋ의 차벼ᄅ화되ᄂ 채ᄀ이ᄆ부여
    - 혀ᄋ펴ᄋ서ᄋ(채ᄀ이ᄆ, 느ᄋ려ᄀ)으ᄅ 고려하ᄂ 차드ᄋ저ᄀ 가ᄆ추ᄀ의무
    : 서ᄂ지ᄂ구ᄀ의 채ᄀ이ᄆ 가ᄋ조
    : 기후벼ᄂ화 대으ᄋ 취야ᄀ구ᄀ의 트ᄀ수사저ᄋ 고려
```


## 4. 거시할당

## 형평적 할당의 주요쟁점

- 선진국과 개도국간 배출추이, 감축능력, 지불능력,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서 발생
-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 할당방식 및 결정요인 선호도 차이 발생

| 구분 |  | 선진국 | 개도국 |
| :---: | :---: | :---: | :---: |
| 감축의무 할당기준 | 감죽잠재성 (감축능력) | 선호 <br> (추가감죽의 어려움, 비용효율성) | - |
|  | 배출량 (a) <br> (배출책임) | 상대적 선호 <br> (예상 배출량) | 선호 <br> (과거, 누적, 일인당 배출량) |
|  | $\begin{aligned} & \text { 소득 (b) } \\ & \text { (지불능력) } \end{aligned}$ | - | 선호(GDP/인) <br> 상대적 비선호(선발개도국) |
|  | GHG 집약도 (c) | 선호 | - |
| 선호도 비교 |  | $c \ggg \mathrm{a}$ | $a>b>c$ |
| 감죽의무 부과대상 선정 |  | 개도국의 향후 예상배출량 확대 가능성 강조,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 촉구 | 현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선진국의 추가적 책임성 강조 |

## 4. 거시할당

형평적 할당 문헌연구 : 형평성 개념

| John Ashton (2003) | 형평성(Equity)과 경제적 이해관계(Interest) 관점 |
| :---: | :---: |
|  | 형평성(Equity) <br> : 철학, 도덕,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포괄적 개념 경제적 이해관계(Interest) <br> : 비용효을성 추구하는 실용적 개념 포괄적 형평성 강조 <br> :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형평성 |
|  | 사전적 관점의 정치적 형평성, 사후적 관점의 도덕적 형평성 구분 |
| $\begin{aligned} & \text { Paul } \\ & \text { Baer } \\ & \text { (2002) } \end{aligned}$ |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형평성(Political Problem) : 국제협상능력에 따른 협상결과 차이 발생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형평성(Ethical Problem) : 협상결과의 정당성(lustification) 판단기준 |
| 종합 | 형평적 할당개념의 적절한 조화 필요 <br> 1) 겸제적 즉면(비용효율성) <br> 2) 비경제적 즉면(정당성 및 합리적 기타요인) <br> 형평성 추진과정(사전적) 및 책임배분 결정(사후적) 접근의 조화 필요 |

## 기후변화 형평성 결정의 주요요인 [John Ashton]

- 배출량(Responsibility)
- 지불능력(Capability)
-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상대적 노력(Comparative Effort)
- 평등주의(Entillement)에 따른 동일한 감축의무 부여
-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본수요(Basic Needs)


## 4.거시할당

국가간 책임배분 기준 : 해외연구사례 및 시사점

|  | 고려요인 | 비고 |
| :---: | :---: | :---: |
| HWWA ('03) Crigui 외 ('03) | - 인당 GDP <br> - 인당 배출량 | - 지불능력과 배출책임 고려 <br> - 각 평균 산정기준(threshold) 설정 |
| 퓨센터 ('98) | - 인당 GDP (상증하 분류) <br> - 누적/현재/인당 배출량 및 <br> 배출증가율 평균 (상증하 분류) <br> - 에너지소비/GDP (상중하 분류) | - 지불능력, 배출책임, 감축가능성 고려 <br> - 배출책임 세부 분류 <br> - 감축가능성을 에너지원단위로 접근 |
| Sagar ('00) | $\begin{array}{\|l} \hline \text { - 인구 } \\ \text { - 인당 GDP } \\ \text { - 인당 누적배출량 } \end{array}$ | - 형평성, 배출책임, 지불능력 고려 <br> - 책임 및 능력의 상관관계 고려 |
| Hohne외 ('08) | - 인당 누적배출량 <br> - 일정 기준 이상 소득계층의 GDP | - 배출책임과 능력의 가중치 고려 <br>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만을 고려한 지불능력 평가 |

- 국가간 감축의무방식 기준은 국가내 부문간 책임배분 시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화 가능 - 일국내 접근 시 국가여건을 고려해 국가간 기준과 일관성/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5. 미시할당

무상할당(그랜드파더링, 벤치마크), 유상할당

|  |  | 장점 | 단점 |
| :---: | :---: | :---: | :---: |
| 무상할당 | GF | - 참가자에게 초기 비용부담 완화 <br> - 과거배출량 기춘으로 BM 대비 단순 접근 가능 | - 형평성 문졔 발생 (조기행동 노력 미반영) <br> - 감죽에 대한 소극적 노력 유도 |
|  | BM | - 산업별 특성 반영 <br> - 참가자에게 초기 비용부담 완화 | - 모든 산업 대상으로 기준 설정 어려움 <br> - 혱정비용 과다 |
| 유상할당 | 경매 | -참여자의 한계비용, 시장가격 정보에 따른 할당으로 참가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 가능 <br> - 정부관점에서 할당방안 마련 용이 | - 참가자에게 초기 비용부담 초래 가능 |

5. 미시할당

## 초기할당, 사후조정, 추가할당

: 국내 적용 가능성

- 사후조정
- 헌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 조(배출권 할당의 취소)에는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의 삭제(취소)는 (1)할당계흭 변경으로 인한 배출허용총량 감소, (2)전체 시설 폐쇄, (3)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가동 예정일부터 3 개윌 이내에 가동 미개시, (()1년 이상 시설 가동 정지, (5)부당한 방법을 통한 배출권 할당의 다섯 가지 경우로 제한
- 사후조정은 할당량 산정 시 반영된 시설의 과거운영실적 또는 예상자료와 계획기간 중 실제 운영실적과의 비교를 통해 초기할당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위의 다섯 가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
또한 배출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할당된 배출권을 조정, 특히 감소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소지가 존재
- 사후할당
-14~'17년 신증설시설 중 할당신청서에 포함된 신증설시설에 대한 추가할당은 법령 해석에 따라 적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공존

| 가능성 혜석 | 불가능성 혜석 |
| :---: | :---: |
| 법률 제 5 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제 1 항제 6 호에 따라 할당계획이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사후할당 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음 | 법률 제 16 조(배출권 할당의 조정)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20조(할당계휙 밴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및 제 21 조(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법률 제 23 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가 추가할당 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엔 사후 추가할당 불가능 <br> -사후할뎡은 시행령 제지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주가햘당을 무의미하게 먼들면서 내용상 충돌 유발 가능성준재 <br> Nㅏ시팽령 2ㅈㅈㅈ형) "해당 이행연도에 할뎡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 분의 30 이상 배출령이 증가한 할댕다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 개일 이내에 주무곤청에 배출권 추가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br> \%사후할항 도입 시운영실적을 고려한 배출량 증가분이 사후에 추가할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시행령 ㄱ1조항 미적용 경우 발생 |

5. 미시할당

국내 무상할당체계

무상할당 기본체계

- 관리업체=사업장=기존시설+신증설시설
- 부문별 업체 할당 구분 (화력발전 외 전업종 vs. 화력발전업종)
- 개요
$>$ 관리업체(=사업장)는 배출권 부여 대상 (예; 배출량 2 만 5 천톤 이상)
> 시설(기존 + 신증설)은 배출권 할당의 기본 산정 단위
- 현황
> 주요국 모두 할당량 산정을 시설 단위에서 접근
> (국내 사업장) 일반적으로 시설 단위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 기존 국내 규제대상 기준(배출권거래제법, 목표관리제)과의 일관성, 연계성
- 전제
>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 단위 모니터링 체제의 구체화, 시설의 개념 및 구분 명확화
- 발전부문과 비발전부문의 차별화
> 국내 전력시장 구조, 국내 간접배출 접근 등을 고려


## 5．미시할당

## 국내 무상할당방식

## 할당방식 기본체계

－그랜드파더링 무상할당 방식
－＇14～＇17년 신증설시설 대상의 할당접근：기본안（초기할당）대안（추가할당）
－개요
＞현 목표관리제 방식（사전인증，초기할당）의 개선방향 모색 필요
＞현 법령（법 제 16 조 배출권 할당의 조정，제 23 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시행령 제 20 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의 조정， 제 21 조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추가할당 방식 검토 필요
＞현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접근방식을 준용하되 모니터링 등 운영개선방안에 기초한 할당방식 검토 필요
－적용 방안
＞기존시설（11～＇13년）：조기할당
＞（기본안）＇14～＇17년 할당신청서 포함 예상된 신증설시설：초기할당
＞（대안）＇14～＇17년 할당신청서 포함 예상된 신증설시설：추가할당
＊예상 vs．비예상 신증설：실현 가능성 판단 기준

## 국내 무상할당 방식 적용 절차（안）



할당대상업체 지정
＊＇11～＇13년 연평균배출량； 125,000 톤／25，000톤 이상
명세서，할당신청서 접수



업체 최종 할당량＝（임시할당량x조정계수）＋조기행동
＊조정계수＝업종 할당량／업종 CAP
＊업종 할당량 $=\Sigma$ 접체 임시 할당량


## 제 2 세션

$$
\begin{gathered}
\text { 녹색기후기금의 특성과 } \\
\text { 향후 정책방안 }
\end{gathered}
$$

발 표 자 : 노 희 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녹색기업 생태계의 할성화를 위한 금응 전락

$$
2014.4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 희 진
hinoh@kcmi.re.kr

## 목차

## I. 연구배경

- II. 녹색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 III. 녹색금융 국제 동향
IV. 국내 녹색금융 헌황
- V .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I. 연구비경

지구온난화로 지구촌의 지속가능성 위협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 산업현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 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 초래

| 구분 |  | 세계 |  | 한국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감축 정도 |  | 헌재 추세 배촐 | 상당 감축 | 현재 추세 배출 | 상당 감축 |
| 예상치 | 온도 | - 21세기말(2081~2100년) 평균기온3.7ㄷㄷ 상승 | -21세기말 <br> (2081~2100년) 평균 <br> 기온 $1.8^{\circ}$ 상승 | - 21 세기 후반 $5.7{ }^{\circ} \mathrm{C}$ 상승 | - 21 세기 후반 $3.0{ }^{\circ} \mathrm{C}$ 상승 |
|  | 해수면 | - 21 세기 말 63 cm 상승 | - 21 세기말 47 cm 상승 | - 남해안과 서해안은 65 cm , 동해안은 99 cm | - 남해안과 서해안은 53 cm , 동해안은 74 cm |
|  | 강수량 | - 건조지역과 습윤 지역의 계절 강수량 차이 확대 <br> - 고위도와 적도 태평양의 경우 강수량 증가 가능 |  | - 21 세기 후반 $17.6 \%$ 증가 | - 21 세기 후반 16.0\% 증가 |
| 경제적 피해 |  | -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GDP의 5~20\% 경제적 손실 예상 |  | - 2100 년 $4^{\circ} \mathrm{C}$ 이상의 기온 상승시 경제적 피해는 2100 년 에 GDP의 약 3\% <br> 2100년까지 누적 피해비용 총 2,800 조원 추정 |  | / 기상청, 2012, 한반도 미래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 I. 연구비경

## ■ 지구 온난화 현상의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프로그램 필요
- 적응과 완화 프로그램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 - 녹색성장의 필요성 증대

- 에너지 및 자원 고갈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완화 필요
-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필요
- 과거 중화학공업 및 전자산업 중심의 성장 한계 봉착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필요
-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 대처 필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진화시키는 방향 모색 필요


## I. 연구배경

■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 필요

-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민간금융의 역할 필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
-정부 차원의 재원 지원은 한계가 존재함
-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금융과는 다른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 제도, 인프라 구축 필요



## II. 녹색금융의 개념가 필요성

## 1. 녹색금융의 개념

## - 녹색금융

-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



## II. 녹색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2. 녹색금융과 연관된 금융의 개념

| 구분 | 개념 |
| :---: | :---: |
| 탄소금융 | 탄소저감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 |
| 기후금융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 |
|  | 녹색성장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 |
| 녹색금융 | (넓은 의미로 탄소금융과 기후금융을 포괄하기도 함) |
| 환경금융 |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 |
| 지속가능금융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원되는 금융 |

## II．녹색금융의 개늠가 필요성

## 〈그림〉녹색금융 및 관련 금용간의 관계



## II．녹색금융의 개늠과 필요성

## 3．녹색금융의 필요성

## 녹색산업의 발전과 녹색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금융시장 조성과 투자 활성화 필요

－녹색산업과 같은 신성장사업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의 벤처 （venture）사업 특성을 지님
－녹색산업은 일반 금융이 당면한 위험 요소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가뭄，홍수，태풍，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 하는 위험
＞규제 위험（regulatory risk）：정부 혹은 국제적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개 별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의 경영정책，경쟁력 및 수익성 등에 영향
＞법률 위험（legal risk）：기후변화 관련 소송으로 인한 위험

## II．녹색금융의 개늠가 필요성

■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민간금융의 지원 체계 확립 필요
－초기 녹색산업은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debt－financing）보다 모험자본의 역할 필요
－성장－성숙 단계로 발전시 자본시장을 통한 IPO，주식발행 등 적극적 자금 조달 가능

〈그림〉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범〉


## II．녹색금융의 개념가 필요성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녹색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하며 금 융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기능 필요
－정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원 투입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자금의 시장 원리 에 따른 지원 체계 필요
－성장가능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녹색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 및 녹 색금융상품의 다양성 확보 필요

## 목차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 1．탄소배츨권시장 동향

■ 탄소배출권시장
－세계 탄소배출권시장거래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2011년 960억유로 $\rightarrow$ 2012년 620억유로 $\rightarrow$ 2013년 384억유로
－2012년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배출권 수요 감소 와 배출권 가격 하락，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한 불 확실성에 기인
－EU ETS 중심의 허용량시장이 탄소배출권시장 주도
－EU ETS의 전체 탄소배출권시장 중 거래규모 비 중은 $94 \%$ ，거래량 비중은 $88 \%$ 점유
－CDM과 II 중심의 프로젝트 시장 침체

〈그림〉 탄소배출권시장 시장점유율


주：2013년 거래규모 기준 자료：Point Carbon（2014）
－2013년 U．N．크레딧 거래규모：2억9，900억유 로（전년 대비 $96 \%$ 감소）
－2013년 U．N．크레딧 거래량：7억 4，200억 유닛 （전년 대비 $75 \%$ 감소）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RGGI와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등 북미 탄소배출권시장의 선전
－2013년 RGGI와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거래량 3 억 9천Mt（전년대비 $200 \%$ 증가）， 거래액 28 억달러（전년대비 $262 \%$ 증가）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시범 운영
－2013～2015년 선전 등 7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한 뒤 2015년 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

| 구눈 | 선전 | 베이징 | 상하이 | 텐진 | 충징 | 광동 | 허베이 |
| :---: | :---: | :---: | :---: | :---: | :---: | :---: | :---: |
| 개시일 | 2013.6 | 2013．말 | 2013．말 | 2013．말 | 2013．말 | 2013．말 | 2013．말 |
| 감축 목표 | 16\％ | 18\％ | 19\％ | 19\％ | 17\％ | 19．5\％ | 17\％ |
| 업체기준 | 5 천 $\mathrm{tCO}_{2}$ | 1 만들 | 1 만 $\mathrm{CO}_{2}$ | $2 \mathrm{Pr}_{4} \mathrm{CCO}_{2}$ | 미정 | 2 간CO2 | 12만다2 |
| 대상업체 | 835개 | 600 개 | 200개 | 120 개 | 미정 | 820 개 | 107 개 |
| 배출량（백만 $\mathrm{CCO}_{2}$ ） | 83 | 100 | 240 | 130 | 125 | 510 | 320 |
| 할당량（백만 $\mathrm{COO}_{2}$ ） | 32 | 50 | 110 | 78 | 미정 | 214 | 112 |
| 자료：삼성경제연구원（2013） |  |  |  |  |  |  |  |

## II．늑색금응 국제 동항

－탄소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중기적으로 배출권의 초과 공급 예상
－2013～2020년 CER과 ERU의 초과 공굽이 전세계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표〉 허용량 시장 거래대금 추이


〈표〉 국제 탄소배출권 잠재 수요 및 공급 예측 ［2013～2020년］

| 구눈 | 잠재 수요 （MtCO2e） | 구눈 | 잠제 공급 <br> （MtCO2e） |
| :---: | :---: | :---: | :---: |
| 호주 | 90 | CERs， EU ETS eligible | 1.690 |
|  |  |  |  |
| EU－27．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 | 1.400 미만 | CERs，others | 223 |
| 일본 | 낮음 |  |  |
| 뉴질랜드 | 70 | ERUS． <br> EU ETS eligible | 7 |
| 북미 | 80 |  |  |
| 계 | 1.600 | 계 | 1.920 |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 2．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투자

## 전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지속적 증가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규모는 2012년 2，444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 감소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는 2004년～2012년 연간 $26 \%$ 성장
－개발도상국에서의 투자 확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의 투자 방식

〈그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 추0ㅇ


〈그림〉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방식


자본시장연구원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 3．해외 녹색금융상품

－녹색금융상품
－각 금융권역별 녹색부문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환경위험을 이용하여 다양한 녹 색금융상품 출시•판매

〈그림〉 해외 녹색금융상품

## 소미금융

－Green Mortgage
－Green Home Equity Loan
－Green Commercial Building Loan
－Green Car Loan，Credit Card

## 자산괄라

－Fiscal Fund（국고펀드）
－Eco Fund，Carbon Fund
－Cat Bond（자연재해채권）
－Eco ETF

## 겁궁ㅇㅇ 밋 투자긍ㅇㅀ

－Green Project Finance
－Green Securitization
－Green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Technology Leasing
－Carbon Finance

## 호 혐

－자동차보험
－탄소보험
－재해보험
－Green Insurance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 －해외 탄소펀드

－공적기금－민간기금 및 합자형태로 조성되어 활용
－사업（project）과배출권（CER）에 모두 투자 가능한 구조로 주로 정부와 민간 금융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음

〈표〉 해외 배출권 편드 현황

| 펀드명 | 주요 주주 | 조성액 |
| :---: | :---: | :---: |
| 프로토타입 카본펀드（PCF） | 일본，캐나다 등 6개 정부 17 개 기업 | 1억 6，500만 달러 |
| 덱샤 FE 에너지 효율 배출 감축 펀드 | 벨기에 덱샤은행，유럽개발은행 등 | 8，800만 달러 |
| FE 라틴아메리칸 청정 에너지 서비스 펀드 | 도쿄전력，스미토모상사，멕시코 개발은행 | 3，610만 달러 |
| 네덜란드 청정개발 설비 | 네덜란드 정부 | 1억 7，000 만 달러 |
| FE 글로벌아시아 청정 에너지 서비스 펀드 | 아시아개발은행，미쓰비시 상사 | 5，000 만 달러 |
| 유러피안 카본펀드 | 알리안츠 CDC ，로프티스 등 금융기간 | 1 억달러 |
| 이탈리안 카본 펀드 | 이탈리아 정부 | 8，000만 달러 |
| 일본 온실가스 감축 펀드 | 닛폰오일，소니，미쓰이，미쓰비시 등 종합상사 | 1 억 4100 만 달러 |
| 사회개발 카폰번트 | 오스트리아，캐나다 등 정부，바스프，닛폰오일 등 | 1억 2860만 달러 |
| 기후변화 PLC | 영국 기후변화 PLC사 | 3억달러 |
| 스페인 카본펀드 | 스페인 정부 | 1억 7，000만달러 |

## III．녹색금융 국제 동향

## －날씨파생상품

－전세계 날씨파생상품의 시장 규모（계약규모）는 2010년 118억달러임
－2005년과 2007년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으나，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
－2000년～2010년 연평균 15\％성장
－상품시장과 연계되어 미국이 주도적임
－OTC 시장을 중심으로유럽 비중 증가

〈그림〉 널씨 파생상품 시장 규모 추0ㅣ


〈그림〉 CME－OTC 지역별 널씨계약 분포


주：계약건수 기준
자료：Weather Risk Management Association

## III. 녹색금웅 국제 동향

## 4. 녹색금융기관

## - 영국의 Green Investment Bank (GIB)설립

- 공공과 민간의 투자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실패와 투자장벽 제거 및 에너지 소비자와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녹색프로젝트의 자금 시장 활용 지 원 및 녹색기술 개발 지원
- GIB 초기 자본금
> 초기 자본금 30 억 파운드로 시작, 2015년에는 150 억 파운드 규모 예상
$>$ 기존 세금 체계 활용 및 정부 소유 자산 매각
- GIB 자금조달 방안
$>$ 기존 3 대 특수법인 및 6 대 기금 녹색부분 예산 활용
$>$ 금융상품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자금 확보(녹색채권, 녹색 ISA, 녹색투자은행 채권펀드)
- GIB 투자 방안
> Venture Capital의 활용, 공동 프로젝트(Co-investment) 진행,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중소 기업 지원,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 III. 녹색금융 국제 동향

## 5. GCF의 츨범

## - 설립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막대한 적응 비용 및 개도국 지원 필요성 증대
- UN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측면에서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 노력을 지원
- UNFCCC의 3조 1항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선진국의 후진국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지원
- GEF와 더불어 새로운 운영주체로 지정
> GCF에법인격부여


## III. 녹색금융 국제 동향

■ 설립 과정

- 제17차 당사국총회 (2011.12, 더반)
-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
- 제 18 차 당사국총회(2012.12,도하)
- 장기재원 조성: 2020 년까지 장기재원 조성 목표 합의
- GCF 1차 이사회(2012.8, 스위스 제네바)
- 우리나라,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사무국 유치 신청 6 개국의 홍보 및 프레젠테이션
- GCF 2차 이사회(2012.10,인천 송도)
-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 확정
- GCF 3차 이사회(2013.3,독일 베를린)
- 대한민국-GCF 본부 협정 승인
- GCF 4차 이사회(2013.6, 인천 송도)
- 초대 사무국장 선출
- GCF 5차 이사회(2013.7,프랑스 파리)
- 한국: GCF 사무국 출범 계획 발표
- 2013년 12월 4일 한국 GCF 사무국 출범


## III. 녹색금융 국제 동향

## - 재원조성 및 운용

- 단기재원:2010년~2012년 300억 달러 조성
- 장기재원
- 2012년~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재원조성 목표
- 장기재원의 출처는 공공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 양자 및 다자는 물론 대안적 재원까지 포함



## III. 녹색금융 국제 동향

## PSF(Private Sector Facility) 의 설치

- GCF가 민간부문의 감축과 적응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PSF(Private Sector Facility)를 설치
-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감축과 적응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금융지원 역할 담당
- PSF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의 참여, 특히 중소기업과 지역 금육기관 등 지역기관들의 참 여를 촉진하며, 민간부문이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또는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 지원
- PSF의 운영은 국가 주도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함



## IV．국니 녹색금응 헌돵

## 1．국내 탄소금융 관련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구분 | 주요 내용 |
| :---: | :---: |
| 목적（제1조） | －저탄소（低炭素）녹색성장에 필요한기반 조성 <br>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활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도모 |
| 기본원칙（제3조） |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형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br> －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학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구축 |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br> （제28조） | －녹색경제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신금융상품의 개발，민간투자 활성화，탄소시장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제46조） | －온실가스 배출허용홍량 설정 및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도입 <br> －제도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등록•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

## IV．국내 녹색금ㅇㅇㅇ 현황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012년 5월 2일「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통과
－20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국회＇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 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2012．2．8）하고， 5 월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안』 통과

〈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 구 분 | 독표관리제 |
| :---: | :--- | :--- | 배출굴거래제

## IV．국내 녹색금웅 현돵

## －녹색인증제도 및 세제지원 제도

－2010년 4월 14일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관련 금융상품 세제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됨
－녹색인증제 시행을 통해 녹색기술，녹색기업 등 투자적격 대상을 제시
－2011년 5월 녹색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통하여 운영 요령 개정
－금융권 여신심사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성 평가（성장률，수익률 등）를 삭제하고 기술성 •녹색성 배점 확대
－2013년 12월말 기준 172 개 녹색전문기업， 30 건 녹색사업 등이 인증

| 구분 | 2011년 4월말 기준 |  |
| :---: | :---: | :---: |
|  | 인증신청 | 인증확정 |
| 녹색기술인증 | 724 | 279 |
| 녹색사업인증 | 67 | 9 |
| 녹색전문기업 | 52 | 28 |
| 합계 | 843 | 316 |


| 구분 | 2013년 12월말 기준 |  |
| :---: | :---: | :---: |
|  | 인중신청 | 인중학정 |
| 녹색기술인증 | 2.712 | 1,416 |
| 녹색기술제품 | 276 | 164 |
| 녹색사업인증 | 127 | 30 |
| 녹색전문기업 | 225 | 172 |
| 합계 | 3,340 | 1.782 |

자료：www．greencertif．or．kr

## IV．국내 녹색금융 현황

－금융회사가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투자（대출）하는 것을 조 건으로 고객（개인）에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비과세
－소득세 면제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그 만큼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녹색전문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 설계
－그러나，녹색인증제와 연계되어 세제 지원제도가 있으나，2013년 12월말 기준 비 과세 녹색상품 전무함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제 도 실시중
－금융회사가 녹색인증을 얻은 녹색사업 및 녹색전문기업에 투자（대출）하는 것을 조건으 로 고객（개인）에게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여 저리의 자금 공급을 가능하 게 하는 구조이나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표〉 비과세 녹색상품

|  | 녹색편드 | 녹색에금 | 눅색채궐 |
| :---: | :---: | :---: | :---: |
| 세제지원 | 배당소득 비과세 <br> 소득공제 $10 \%, 300$ 만원 $)$ | 이자소득비과세 | 이자소득비과세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3년 이상 | 1인당 2천만원 |

## IV．국내 녹색금응 현황

2．녹색금융 상품
－개인상품

| 비푀센녹색상중 | 유늠／조슴 | 괃 | 핀드 | 바칭 | 개이ㄴㅐㅐㅐㄹ |
| :---: | :---: | :---: | :---: | :---: | :---: |
| $*$ | $\checkmark$ | $\checkmark$ | $\checkmark$ | $*$ | $\checkmark$ |
| 비라서 놋색상중 | 녹ㅅ4욷․․al | 찬분줌카든 |  | 자톻차 |  |
|  | 녹삭형핯 | 눅사생ㅇ힌／ㄱㅣㅜ／마이ㄹㅣㅣㅣ |  | 자젖거 |  |
|  | 마일리지 |  |  | 기타 |  |

－기업상품

| ratack | 정홍다송 | 정싼보중 |  | 장한따장 |
| :---: | :---: | :---: | :---: | :---: |
| $\checkmark$ | $\checkmark$ | $v$ | $v$ | ＊ |
| 녹낵셩평산볍 <br>  | 녹녹봉영선여 <br>  |  |  다앙 | 보오ํํ충 |
|  |  |  |  |  |
|  대썄 | 녹승인중 기咜会 |  |  | S9ㅜํ\％ |
|  |  <br>  | गु长 |  훈아 | ग16． |
|  （ESCO）후요 |  |  | 기라 |  |


 गद्ध


## IV．국니 녹색금응 현황

## ■ 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의 자금 유입 미비

〈표〉 연도별 녹색대출 잔액［은행연합회］

| 구분 | 2009넌말 | 2010넌말 | 2011년말 |
| :---: | :---: | :---: | :---: |
| 전체 녹색대출 | 5．5조원（100\％） | 9．9조원（100\％） | 14．8조원（100\％） |
|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br> －민간은행 | $\begin{aligned} & \text { 3.1조원(56.4\%) } \\ & \text { 2.4조원(43.6\%)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6.4조원(64.6\%) } \\ & 3.5 \text { 조원(35.4\%) } \end{aligned}$ | $\begin{gathered} \text { 10.4조원(70.3\%) } \\ \text { 4.4조원(29.7\%) } \end{gathered}$ |

자료：녹색성장위원회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와 직접투자를 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 집행률이 낮음

〈표〉 신성장동력 및 녹색 관련 펀드 현황

| $\begin{aligned} & \text { 관렬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펀드명 | $\begin{aligned} & \text { 조성액 } \\ & \text { (엄웅)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투자액 } \\ & \text { (업운) } \end{aligned}$ | 집행률 <br> （2012년 2윌말 기준） | 걸정일 |
| :---: | :---: | :---: | :---: | :---: | :---: |
| 지경부 | 신성장동력펀드 | 10,011 | 3，263 | 32．6\％ | 2009.6 |
| 중기청 | 모태펀드內 신성장동력子펀드 | 7.897 | 3，014 | 38．2\％ | 2009.6 |
| 금융위 | （정금공）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 31，746 | 10，533 | 33．1\％ | 2010.11 |
|  | （정금공）녹색산업투자회사 | 1.000 | 299 | 29．9\％ | 2010.7 |
|  | （산은）신성장동력 Green Future펀드 | 1，001 | 100 | 10．0\％ | 2009.12 |
| 합계 |  | 51，655 | 17，209 | 33．3\％ |  |

## IV. 국내 녹색금융 현황

## 3. 녹색금융의 문제점

■ 국내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 미비 및 집행실적 미흡

- 대출의 경우 대출 기준 미비
- 녹색펀드의 경우 투자집행률 저조
- 녹색금융 기준 미정립


## ■ 세제지원 제도와 녹색인증제도의 역할 미흡

- 녹색인증제를 통한 세제 지원 대상 부족
- 녹색인증제와 연계한 녹색예금•채권 상품 전무함
- 특히, $60 \%$ 이상 녹색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녹색인증제와 연계된 녹색예금•채권 상품의 출시가 어려움


## IV. 국내 녹색금융 현항

## ■ 투자 대상 또는 투자 기업에 대한 분석 체계 미흡

- 산업 및 금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한 리스 크 평가가 어려운 구조임


## - 인프라 구축 미흡

- 제도적 인프라 미비: 배출권에 대한 회계 처리 등 제도적 미비
- 기술적 인프라 미비: 탄소감축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체계 미확립
- 인적 인프라 미비: 배출권/탄소감축부문과 금융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 목차


11. 녹색금융의 개념과 필요성
III. 녹색금용 국제 동향
IV. 국내 녹색금융 현황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1. 관련 제도 개선

## 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의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기업은 탄소감축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탄소금융 체계 확립

| 녹새성장기번법의 목적 | - 환경 개선 및 경제적 성장 |
| :---: | :--- |
| 탄소금융의 역할 | - 탄소배출감축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
| 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 | - 기업은 탄소감축을 기업의 부담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바, 성장의 수단 <br> 으로 삼우 있도록 탄소금융 및 정부의 지원 필요 |

## V. 녹색금응 향후 추진전략

■ 제 3 자 시장참여 확대 필요(시행령안 부칙제 2 조)

- 제도 도입 초기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1 차 및 2 차 계획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시장 참여 가능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시장 여건에 따른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허용 필요

■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 \%$ 무상할당 기준 재검토(법 제12조 및 시행령안 제15조)

-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초과할당에 따른 문제점 예상
- 무상할당 비율이 높을수록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EU-ETS 1기 시 행의 문제점 부각
- RGGI의 경우 경매에 따른 수익의 재투자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 $100 \%$ 무상할당 업종 기준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 존재
- 전력산업의 경우 $100 \%$ 무상할당업종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소비자에 최종전가되는 구조 가능
- 온실가스 저감의 실효성과 한국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재검토 필요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나. 기존 녹색금융지원 제도 개선

## - 세제지원제도 및 녹색인증제도 개선

-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 제공에도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세제 혜택과 자금공급 대상 발굴 필요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다. 회계제도 및 신용평가개선

-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처리 문제 명확화
- 배출권과 관련되어회계 및 세무 처리 문제 발생
- 배출권의 자산성 여부, 자산이 분류 및 배출권 할당시점에 상대 계정의 회계처리 등의 문제 발생
- 탄소배출권 취득 및 사용, 매각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상 기존 세법 조문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따라 적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함께 기존 세법 조문의 적용 또는 신설 • 수정 필요

기업의 신용도 산정시 탄소배출량을 평가요소로 고려

- 향후 탄소배출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임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라. 탄소정보 공개제도 개선

## ■ 기업의 녹색 정보공개 방향

- 자발적 정보공개 유도에서 정보공개 의무화로 단계적 접근
- 상장 및 기업공시요건에녹색경영정보 반영
-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보공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자발적 공 시 체계에서 관련 정보를 의무화 할 경우 양적•질적 성장 가능


## 탄소 정보 체계 구축

-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녹색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환경부 등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환경규제 준수 정보, 녹색 기업 지정 시의 정 보 등 각종 환경정보 및 개별 기업의 탄소 정보를 여신, 투자분석 지원을 위해 제공
- 기업의 사전 동의 필요
- 녹색•탄소금융상품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2.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영업행위 기준 설립

##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 여신, 대출, 투자상품에 대한 금융권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제시
- 녹색금융 행위에 대한 자율적 지침 마련
- 보여주기 위한 녹색금융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는 녹색금융 활동의 지침 미련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3. 녹색전문금융기관(Korean Green Investment Corporation 설립

| 항곡 | 내용 |
| :---: | :---: |
| 필요성 | - 기존 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금융지원 한계 존재 |
| 성격 | - 은행으로 설계를 하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 예금자보호의 문제가 있어, 금융투자 회사형태로 설계 |
| 출자 | - 정부가우선 출자하고, 기존 금융기관의 추후 참여 |
| 역할 | - 녹색성장에기여하는 금융지원 <br> - GCF와의 협조체계 구축 <br> - 기존의 정부 녹색펀드의 통합관리 <br> - BAT(BestAvailable Technology)의 개발 및 지원 <br> - 배출권거래제도참여 |
| 해외사례 | - 영국의 GIB (영국정부 30 억 파운드 출연) <br> - 호주의 CEFC (호주정부출연) |
| 추진부서 |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의 협의 필요 |
| 설립추진 | - 정부의 의견 수렴후 민관합동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 V．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4．신규 금융상품 개발

## －녹색관련 신규 금융상품 개발

－탄소관련 금융상품 개발
－탄소배출권 펀드，탄소관련 지수 및 ETF，배출권선물，보증보험 등의 탄소상품 개발
－에너지 효율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 기업 지원 금융 상품 개발
－날씨 관련 신종 금융상품 도입
－날씨 선물이나 날씨옵션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날씨파생상품은 기온，강수량，적설량，서리，태풍 등의 날씨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치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래자 간 이래 일정 시점에 금전을 수수할 것으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자본시 장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함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공적－민간 자금 결합 금융 지원 상품 설계

## V．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 탄소감축기업 또는 기술 대상 정부지원 모태펀드 설정

－재정지원 방식의 탄소감축 기술 또는 기업 지원 모태펀드 조성
－사업 초기 시설투자 및 서비스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기업 지원 모태 펀드（Fund of Fund）조성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母펀드）로 결성하고，母펀드를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 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출자방식
$>$ 초기자금（seed money）$\rightarrow$ 모태펀드 $\rightarrow$ 자（子）펀드（투자조합 등）$\rightarrow$ 녹색기업에투자
－주요 투자자
＞정책금융기관，정부
$>$ 녹색펀드 구성시 자금의 일부를 공적 연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허용
－필요시 민간투자자에게 수익 우선 배분 고려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5. GCF와의 연계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 개발도상국 진출 기회 모색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개발 분야를 둘러싼 민관협력형 SOC 투자 및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 신사업영역 개척
- GCF와의 협업
- GCF의 보증, 리스크 공유(risk sharing)을 통한 수익성 보유 프로젝트 참여
- 해외 기후변화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전문금융기관 설립
- 프로젝트 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 또는 금융기관 공동의 전문회사 설립


## ■ 민간금융의 참여 활성화 필요

- GCF의 PSF를 촉매제로 활용하여 민간 금융의 참여 유도
- 탄소감축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영역에 대한 민 간자금의 참여 촉진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 ■ GCF와 공동으로 저탄소 산업 기술개발 단지의 조성

- GCF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저탄소 기술개발 벤처단지 조성 및 개발 기술의 개발 도상국 지원 방안 강구
-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는 산업 생태학을 응용한 산업 단지
-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오염물 무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 - 국내 기후변화 전문인력 육성

- 가능한 많은 국내인력이 GCF 고용 여건 조성


## GCF 자금을 활용한 북한 지원 방안 강구

- 북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사업 투자 가능성 모색
- 대체에너지 발전소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 대상
- 단, 북한의 정치적 문제 및 국제 정세 고려 필요


## V . 녹색금응 향후 추진전략

## 6. 국제 협력 강화

## - 범아시아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지향

- 주요 아시아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지원
- 우리나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발, 법 • 제도 정비, 거래 메커니즘 설계, 거래시 스템 구축, 거래소 설립 지원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주요 개도국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연계한 범아시 아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추진
- 단순히 배출권 거래 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자금중개 등 관련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 시아지역 탄소금융허브 기반 구촉


## V. 녹색금융 향후 추진전략

〈그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예정] 지역 현황



[^0]:    1국ㄴㄴㅐㅐㅊㅊㄹ뤈거ㄹㅐㅐㅔㅔㅊㅊ진겨ㄱㅘㅘ밋 항후중일정

    추진경과 및 주요 일정
    2010. 10

    향후 일정

    - 기본법안 초안 작성 (녹색성장위원회)

    2012. 05

    할당계획 수립 ('14.06)

    - 할당대상업체 지정 ('14.07)
    - 할당량 신청 ('14.08)
    - 국회통과
    - 배출권 할당 통보 ('14.10)
    - 배출권 할당량 이의제기 ('14.12)

    2012. 11

    - 시행령 확정 (환경부)

    2014. 01

    -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 거래소 지정: 한국거래소(KRX)

